

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·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2022년 1월 25일

미래·복지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2년 1월 7일

나. 제안자: 송순호 의원 외 6명

다. 회부일자: 2022년 1월 17일

라. 상정일자: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미래·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·의결(2022.1.25.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: 송순호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관내 아동·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·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- 2) 아동복지시설, 청소년복지시설, 퇴소청소년 등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2조)
- 3)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4조)
- 4) 시책 및 지원사업, 자립지원센터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, 제6조)

- 5) 보호기간 연장, 지도 및 점검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7조, 제8조)
- 6) 예산지원,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9조, 제10조)
- 7) 시행규칙의 근거를 규정함(안 제11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호 및 제52조
-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1호
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31조
- 「아동복지법」 제16조의3(2022년 6월 22일 시행)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해당부서: 아동청소년과

라. 기 타: 입법예고(2022. 1. 7. ~ 1. 11.) 결과 의견 없음

#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허은옥)

가. 제정취지

- 아동·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·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여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- 안 제2조(정의) “아동·청소년 복지시설”, “퇴소·청소년 등”에 대해 정의함

- 아동복지시설: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설
  - 청소년복지시설: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31조에 따른 시설
  - 퇴소청소년 등: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, 아동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 또는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
- **안 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조례를 따르도록 함
- **안 제4조(구청장의 책무)**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시책의 수립·시행과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음
- **안 제5조(시책 및 지원사업 등)**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사업의 종류를 명시함
- 주거·생활·교육·취업 등의 지원사업
  -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산형성지원사업(금융 컨설팅 포함)
  - 문화·예술·체육 활동 지원사업
  -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
  - 정서적·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
  -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
  -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
- **안 제6조(자립지원센터)** 자립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및 민간위탁에 관하여 규정함
- **안 제7조(보호기간 연장)** 「아동복지법」 제16조의3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에 대해 보호조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, 법 개정 시행에 맞춰 부칙 규정에 해당 조항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

하도록 함

- 안 제8조(지도 점검) 안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 시 추진상황과 예산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·점검하도록 함
- 안 제9조(예산의 지원) 안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
  -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르도록 함
- 안 제10조(협력체계 구축) 퇴소청소년 등을 위하여 아동·청소년 복지 관련 분야의 전문가,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 체계를 구축·운영 할 수 있도록 함

#### 다. 종합의견

- 현행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며,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 가야하는 어려움에 처해있음
-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보호종료 아동은 일반 청년대비 다양한 경제적·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,
  - ※ 보호종료아동 vs. 일반청년 : ▲(월임금) 182만원 < 233만원 ▲(실업률) 16.3% > 8.9%
  - ▲(대학진학률) 62.8% < 70.4% ▲(자살생각 비율) 50.0% > 16.3%
- 이에 지난 2021년 7월 13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“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”을 발표한 바 있음

#### ·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6대 추진과제

1. 보호연장 강화 2. 자립지원전담기관·인력 확충 3. 소득·주거안전망 강화
4. 진로·진학·취업 등 5. 심리·정서 지원 6. 법령 정비 등

- 그 후속조치로 지난 2021년 12월 21일 아동복지법이 개정<sup>1)</sup>되어 보호대상 아동의 의사에 따라 만 25세까지 보호조치를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음 (2022.6.22.시행)
- 우리구는 2021년 12월 말 현재 가정위탁을 포함하여 총 188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으며,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0명의 아동이 보호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남 ※현황자료 별첨
- 본 조례는 이러한 아동·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·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, 개정 아동복지법의 취지를 살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및 지원시설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되고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

##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## 6. 토론요지: 생략

## 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- 붙임 1) 아동·청소년 복지시설 현황 및 보호아동 현황 1부.  
2) 관계법령 1부.

---

1) 제16조의3을 신설 “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.”고 규정함

## 참고

# 아동·청소년 복지시설 현황 및 보호아동 현황

(전체 자료 2021.12.31.기준)

### □ 아동복지시설 현황

구분	시설명	주소	정원/현원(명)	비고
아동양육시설 (2개소)	지온보육원	강서구 금남화로26가길 120(개화동)	55/51 (남31,여20)	
	성남보육원	충청남도 서산시 쌍연북 3길 33(동문동)	60/59 (남43,여16)	지방이전
공동생활가정 (5개소)	살레시오 방화동 나눔의집	방화대로45길56-4 (방화동)	7/3	남아시설
	마드레나자레나의집	강서로26길 51-8 (화곡동)	7/5	남아시설
	예원	강서로 45길138, 804호 (내발산동)	7/4	여아시설
	리온	송정로 14-12 1층 (공향동)	7/5	남아시설
	호주아녜스의 집	까치산로4가길 36 (화곡동)	7/7	여아시설
학대피해아동쉼터 (1개소)	꿈마루 학대피해아동쉼터	시설위치 비공개 (강서구)	7/3	남아시설

### □ 청소년복지시설 현황

구분	시설명	주소	정원/현원(명)	비고
청소년복지시설 (2개소)	강서청소년쉼터	초곡마을로10길5 201호(화곡동)	8/6	
	어울림청소년쉼터	공향대로48길 76(화곡동)	7/5	

### □ 보호아동 현황

구분	총 계	양육시설	공동생활가정	가정위탁	아동청소년쉼터
인원	188명	110명	24명	40명	14명

### □ 보호종료아동 현황(연도별 퇴소아동 수)

연도	총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
인원	99명	37명	14명	21명	20명	7명

## □ 「아동복지법」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아동”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
제16조의3(보호기간의 연장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. 다만,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.

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(대학원은 제외한다)에 재학 중인 경우
2.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·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
3.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·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[본조신설 2021. 12. 21.]

[시행일: 2022. 6. 22.]

제52조(아동복지시설의 종류)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아동양육시설: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, 양육 및 취업훈련,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2. 아동일시보호시설: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3. 아동보호치료시설: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
  - 가.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,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  - 나. 정서적·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·치료하는 시설
4. 공동생활가정: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, 양육,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5. 자립지원시설: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6. 아동상담소: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, 치료,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7. 아동전용시설: 어린이공원, 어린이놀이터, 아동회관, 체육·연극·영화·과학실험전시 시설, 아동휴게숙박시설,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·오락,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8. 지역아동센터: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·교육,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,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9. 아동보호전문기관
10.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
11.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



## □ 「청소년 기본법」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.
2. ~ 8. (생략)

## □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

제31조(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)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(이하 “청소년복지시설”이라 한다)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청소년쉼터: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·학교·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·주거·학업·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
2. 청소년자립지원관: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·학교·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
3. 청소년치료재활센터: 학습·정서·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·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
4. 청소년회복지원시설: 「소년법」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·주거·학업·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